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2016. 8. 29)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9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월)

4. 관계근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2015.8.5)」
 -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의 편리성 제고
 -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동(同)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5.8.5-환경부)에 따라 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서울시 정책결정에 따라 서울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전입 전 종량제봉투를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나. 대형폐기물 환불 규정 일부 수정(안 제29조의 2)
 - 대형폐기물 취소(환불 신청) 시 수기로 관리하는 장부 폐지 및 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불 요구사항 관리
- 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1)
 - 대형폐기물 품목 중 금고는 철제 안에 콘크리트 등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 처리가 어려워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함(민간수거업체에서 처리)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단위 : 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비고
금고	0.5㎡ 당	10,000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

라. 특수규격봉투 용량 추가에 관한 사항(안 별표4)

- ▶ 건설폐기물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을 기존 50ℓ 외에 20ℓ를 추가하여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편의 제공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ℓ	-	2,040
50ℓ	4,600	5,100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2015. 8. 5.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품목 및 규격별로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적용·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구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로 이사한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前) 사용하던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시 발생하는 구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민 편의 위주의 청소행정을 실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1. 환경부 지침 및 구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 실현을 위해

- 1)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前)에 사용하던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2) 대형폐기물 취소(환불신청) 시 그 동안 병행해오던 수기 및 전산시스템 대형폐기물 환불 처리방식 중 불필요한 수기방식을 폐지하고 “대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산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청소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3) 대형폐기물 폐기 시 보안장치의 문제 소지가 있는 금고를 대형폐기물 종류에서 제외하고 민간수거 전문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였으며,
- 4) 그 동안 건설폐기물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 종량제 특수규격봉투를 1 종류(50ℓ) => 2 종류(50ℓ, 20ℓ)로 추가하여 쓰레기 배출되는 양에 적당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가. 띄어쓰기 용법에 맞게 정비함

- 1) **안 제2조** : 제1호 중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페알칼리·동물”로, 제3호 중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제6호 중 “주변 환경”으로, 제7호

중 “별표 1에서”로, 제8호 중 “별표 2에서”로 하고,

2) **안 제3조** :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로 하며,

3) **안 제11조**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 배출할 수”로 하고, 제2항 중 “및 주변 환경”으로 하고,

4) **안 제12조** : 제1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함.

나. 붙여 쓰기 용법에 맞게 정비함

1) **안 제24조** : 제3항 중 “알아볼”로,

2) **안 제31조** :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3) **안 제32조** : 제3항 중 “반입처리 시”로 하며,

4) **안 제34조** : 제1항 중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함.

다. 법적 간결성 및 함축적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정비함

1) **안 제10조제2항** :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제16조에 따른”로,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제2항”으로 하며,

2) **안 제29조의2제2항** :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 “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하고,

3) **안 제30조** : “제9조제1항 규정”=>“제9조제1항”으로 하며,

4) **안 제32조제3항** :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 “비용이 포함되며 수도권 매립지”로 함.

라. 동(同) 조례 조문 중 신설, 오자 탈락 및 수정되는 조항

1) **안 제2조** 제4호가목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6호 중 “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제9호 중 “5톤”=>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로 하고,

2) **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제4호규정”에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 “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하고,

3) **안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에게는”=>“자에게는”으로 함.

4) **부칙 내용**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중 특수규격봉투 20리터 가격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신설하는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 7. 14. ~ 8. 3.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구 전입자에게 종전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형폐기물 환불처리 방식을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전산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함은 물론 보안장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고는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 특수 규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다양화(50ℓ, 20ℓ)하는 등 개정된 환경부 지침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배출방식을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중 특수규격봉투 20리터 가격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례를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는 조례 시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판단됨.
- 다만 폐기물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대형폐기물 환불 시 “수기 처리방식” 및 “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병행하여 해오던 방식에서 “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산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대형폐기물 중 금고를 대형폐기물 수거 종류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 고장 마포”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5. 8. 5.

mev 환경부

- 목 차 -

I . 목적	1
II . 기본원칙	1
III . 세부 시행지침	2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2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12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14
4.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1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22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3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25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27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관한 사항	27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28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1
IV .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32
V . 행정사항	33
[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34
[붙임2]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43
[붙임3] 종량제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	49
[붙임4]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51
[붙임5]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	57
[붙임6]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보고	59
[붙임7] '00년 연휴기간[설·추석] 쓰레기 관리대책	74
[붙임8] '00년 000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76
[붙임9] '00년 휴가철 피서지·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79
[붙임10] '00년 휴가철 피서지·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81

I. 목 적

-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II. 기본원칙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
 -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
 -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

□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봉투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 봉투가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고 자치단체간 년 1, 2회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
 - ※ 시·군·구간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교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환매수 제한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전용 포대, 마대가 없는 자치단체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일반마대에 담은 후 마대전용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후 배출(일반마대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에 포함)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가전제품류 :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 가 구 류 :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 생활용품 :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닛, 피아노, 기타 등
 - 기 타 :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플라스틱류 등

나.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배출 시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체계 간소화 추진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①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구입
- 수거전담반 직원이 배출원을 방문하여 배출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②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제작(폐기물부착용, 배출자 보관용(수수료 납부필증) 2매)하여 봉투판매소에 판매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배출스티커에 기재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③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배출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거업체에서 처리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영수증은 출력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위조 영수증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위조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⑤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 수거

- 재사용 가능 폐기물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 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 활용 수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것만 수집·운반이 가능하므로 ①재활용센터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②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자와 연계협약을 통해 수거 추진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 납부한 처리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
 -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유형에 따라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조치

마.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자치단체 집하장 또는 보관 장소에 일시 보관
 - 회수된 대형폐기물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센터에 인계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거나, 민간 재활용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조치
- 대형폐기물의 직매립을 지양하고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후 소각 또는 처리
- 파쇄과정에서 분리된 고철 등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